

##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
[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구역]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제3호에 따른 안마원을 건축물 불허용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강동구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.
3. 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(결정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5월 2일  
서울특별시장

### 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(안)

####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(안)

- 안마원을 불허용도로 결정한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구역

자치구	구역 수	구역명
강동구	5개소	강동구청 주변, 둔촌동역 주변, 성내지구, 암사지구, 고덕택지
강서구	3개소	가양택지개발지구, 방화1 택지개발지구, 방화2 택지개발지구
광진구	6개소	건대입구역지구, 군자역지구, 화양1지구, 화양2지구, 자양지구, 아차산역지구
구로구	1개소	구로역 및 신도림역
성북구	1개소	월곡
종로구	2개소	돈화문로, 세종로

####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(안)

- 건축물 불허용도 계획 결정(변경)(안)

- ▶ 변경내용 : 건축물 불허용도로 지정된 안마원을 일괄 제외함

Ⅱ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

Ⅲ. 열람장소 : 서울시청 도시관리과(☎ 2133-8381) 및 6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

Ⅳ. 관계도서 : 게재생략(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)

Ⅴ. 기타사항

-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을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FAX : 2133-0738) 및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